

kiri Weekly

2014.3.31 제277호

이슈

책임준비금 시가평가 도입과 보험회사의 선제적 대응

글로벌 이슈

일본 국채시장의 위험요인과 아베노믹스

영국의 금융자문서비스 현황과 시사점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책임준비금 시가평가 도입과 보험회사의 선제적 대응

김해식 연구위원, 조재린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

요약

- 국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관한 평가기준은 수년 내에 시가평가를 수용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시행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지급여력평가에도 반영될 것임.
 - 2018년 시행 예정인 새 보험회계기준(IFRS 4 phase 2)은 현재와 같은 책임준비금의 원가 유지 관행을 더이상 인정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책임준비금을 시가로 평가할 것을 요구함.
 - 2011년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는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원칙을 담은 국제보험감독원칙을 개정·공표한 바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년 국내 보험감독이 국제보험감독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할 예정임.
- 책임준비금 시가평가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자본의 실질가치를 감소시키며, 책임준비금의 평가 결과를 지급여력평가에 반영할 경우 지급여력비율 또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의 할인율은 국채수익률과 같은 무위험수익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산운용 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책임준비금 재평가(부채적정성평가)와 비교할 때 시가평가가 시행되면 보험회사가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은 크게 증가할 것임.
 - 즉,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수익률이 무위험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시가평가 시 낮은 할인율이 적용되며 보험회사 자본의 실질가치가 감소하게 됨.
- 따라서 새로운 회계규제와 지급여력규제의 시행 시기를 고려할 때 보험회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내외에 불과하므로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조기 대응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책임준비금 시가평가는 국내 보험산업에 익숙한 평가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철저한 준비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서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보험회사의 운영위험 급증으로 이어질 것임.
 - 이에 계량영향평가를 통해서 계리 및 회계 인력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시장 인프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보험감독원칙 모두 시가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부 가이드라인이 적시에 제공될 필요가 있음.

1. 검토 배경



- 국내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에 관한 평가기준은 수년 내에 시가평가를 수용하게 될 것임.
 - 2013년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평가기준을 원가기준에서 시가(時價)기준으로 변경하는 제2차 초안을 공표하였으며, 향후 1년 이내에 초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국내 보험산업에도 빠르면 2018년부터 시가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2011년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는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원칙을 담은 국제보험감독원칙을 개정·공표한 바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2013년에 이어 2018년에도 국내 보험감독이 국제보험감독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할 예정임.

- 국내 금융감독당국은 보험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의 분모인 요구자본 산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평가기준 변화가 향후 지급여력규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는 부족함.
 - 금융감독당국은 2013년부터 요구자본 산출 기준을 높이고 있으며 2015년까지 요구자본 강화 작업을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가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결국 국제회계기준의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평가에 시가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자본규제 변화는 시행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곧 다가올 미래이므로 보험회사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이들 규제의 변화에 대비해야 함.
 - 국제회계기준의 책임준비금 시가평가는 국내 보험회사의 자본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지급여력평가에 시가평가 결과가 즉각적으로 반영될 경우 지급여력비율 하락은 불가피함.
 - 감독 측면에서도 두 규제의 변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규제 변화가 보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2.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에 관한 국제기준



가. IFRS 책임준비금 시가평가 시행은 2018년 예상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보험부채(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에 관한 새로운 보험회계기준(IFRS 4 phase 2)의 등장임.
 - 새 보험회계기준은 현재와 같은 책임준비금의 원가 유지 관행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책임준비금을 시가로 평가할 것을 요구함.
 - 더구나 IFRS를 전면 수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준비금 시가평가가 단순히 국제적 정합성 제고 차원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반드시 적용해야만 하는 강행규정임.
- 물론 국내 지급여력평가체계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책임준비금 시가평가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비율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 지급여력평가가 IFRS처럼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지급여력평가에서도 반드시 IFRS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IFRS와 국제보험감독 간에도 책임준비금 평가기준의 수렴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
 - 현재 국내 지급여력평가에서는 책임준비금의 재평가(부채적정성평가) 결과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나. 2018년 IMF의 금융시장 안정성 평가

- 그러나 국내 지급여력감독도 책임준비금 시가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
 -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¹⁾는 금융위기 이후 각국 감독자에 제시하는 국제보험감독원칙(Insurance Core Principle, ICP)을 전면적으

1)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는 보험시장의 국제화와 국내외 경제에서 보험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보험감독관 간 상호 관심사, 현안 논의, 표준보험감독기준 제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창립회원(Charter Member)으로 참여하여 1999년 금융감독기구 통합 이후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용어사전 참조.

로 개정하여 2011년 서울 총회에서 이를 공표함.²⁾

- ICP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산·부채 평가(ICP 14), 자본 계층화(ICP 17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및 지배구조 강화(ICP 16 전사적 위험관리), 시스템위험에 대응한 감독자 간 협력 강화(ICP 24,25,26)임.
- 특히, ICP 14는 보험감독자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을 통해 금융부문 안정성 평가(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평가기준은 IAIS 등 국제감독자기구가 제시하고 있는 감독원칙임.

- IMF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25개국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평가함.
- 이때, 주요평가기준 중 하나는 금융감독이 국제기준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이며, 보험부문의 국제기준은 IAIS가 제시한 ICP임.

■ 지난 2012년 국내 금융감독당국은 2013년 FSAP 평가를 앞두고 RBC 강화 계획을 공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18년 FSAP 평가에 대비한 종합적인 로드맵 시안을 발표함.³⁾

- FSAP 평가는 5년마다 이루어지므로 우리나라는 2018년에 국내 보험업 감독법규가 ICP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평가받을 예정임.⁴⁾

다. 다국적 보험그룹에 적용할 국제지급여력규제 구체화

■ 한편, IAIS는 전세계 주요 보험그룹(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 IAIG⁵⁾에 적용할 공통 자본규제기준(ICS: Insurance Capital Standard)을 2016년까지 마련하고 2019년부터 동 기준을 시행할 계획임.

2) 김해식·임준환(2011),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서울 총회 논의 결과와 의미」, KIRI Weekly, 보험연구원.

3) 금융감독원(2014),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로드맵(시안)」.

4) 2013년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등과 함께 IMF의 FSAP평가를 받은 바 있음.

5) IAIG는 ①3개 이상의 관할지역(국가 또는 주)에서 영업하고 있고, ②총수입보험료의 10% 이상이 외국에서 발생하여야 하며, ③총수입보험료 10억 불 이상에 50억 불 이상의 총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약 50개의 보험그룹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IAIS(2013. 9),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The IAIS 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ComFrame)”, p. 3.

- IAIS는 2010년부터 “IAIG에 적용할 정량적 자본규제기준과 포괄적인 그룹감독의 틀(ComFrame: 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함.
 - IAIS는 2013년 대만 연차총회에서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한 ComFrame과 관련하여 2016년까지 정량적인 자본규제기준(ICS)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시행하는 로드맵을 발표함.
- 2019년부터 시행될 ICS는 다국적 보험그룹에 적용되는 기준이나, 향후 모든 보험회사의 자본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준거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가까운 미래에 국내 보험회사가 ICS를 적용받을 가능성은 낮으나, 다국적 은행에서 일반 은행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온 BIS 규제의 역사가 보험산업에 재현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수년 내에 전세계 모든 보험회사에는 공통 자본규제가 적용될 것이며, 이때 보험부채는 시가로 평가될 것이 요구될 것임.

3.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와 지급여력비율



가. 할인율에 민감한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가치

-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규모는 금리 변동에 따라 그 증감 폭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 보험상품은 계약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적립할 책임준비금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되는 할인율 수준에 따라서 책임준비금의 가치가 큰 차이를 보임.
 - 특히, 높은 고정 금리를 약속한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회사가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 가치는 할인율 수준에 따라 그 증가 폭이 크게 변동할 수밖에 없음.
- 더구나 보험회사의 경우 자산보다 부채(책임준비금)가 금리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
-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만기가 자산의 만기보다 길어서 금리가 하락하면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폭보다 책임준비금의 가치가 증가하는 폭이 더 크게 나타남.

- 결국 금리(할인율)가 하락하면 보험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본의 실질 가치가 감소하게 됨.

나. 책임준비금 평가와 지급여력평가 연계

- 책임준비금을 시가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현행 보험시장 및 금융시장 여건을 위험률과 할인율 등에 반영하여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는 것임.

- 책임준비금의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할인율이므로 위험률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는 현행 금리 수준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책임준비금을 재평가하는 것임.
- 이때, 할인율은 국채수익률과 같은 무위험수익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산운용수익률을 할인율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책임준비금 재평가(부채적정성평가)와 비교할 때 시가평가가 시행될 경우 보험회사가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은 크게 증가할 것임.

- 부채적정성평가는 2018년에 시가평가로 대체될 수밖에 없고, ICP와 ICS 논의로 보아 향후 수년 내에 국내 지급여력평가에도 시가평가가 반영될 것임.

- 현행 부채적정성평가는 시가평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느슨한 평가기준이고, 현행 지급여력감독은 부채적정성평가 결과를 지급여력비율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보험회사 지급여력평가 체계가 책임준비금의 평가 결과를 즉각적으로 지급여력비율에 반영하게 된다면, 시가평가의 영향은 2012년 RBC 강화 계획의 영향을 초월할 것임.⁶⁾

4. 남은 5년, 경영상의 시행착오 최소화



- 책임준비금 시가평가는 국내 보험산업에 익숙한 평가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철저한 준비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서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보험회사의 운영위험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6) 조재린·김해식·김석영(2014),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보험연구원.

-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는 자본시장에 공표되는 일반(IFRS) 재무제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급여력평가 목적의 감독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줄 것임.
 - 그러나 시가평가에 필요한 숙련된 계리 및 회계 인력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보험시장 내 충분한 평가 관행이 축적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부채평가기준의 변화가 보험회사에 상당한 운영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보험산업 현장의 계량영향평가를 통해서 계리 및 회계 인력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시장 인프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시가평가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보험감독원칙 모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내 회계기준제정자와 보험감독자는 제도적 인프라로서 시가평가에 필요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적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책임준비금 시가평가가 국내 회계규제와 지급여력규제에 향후 수년 내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시행 시기를 고려할 때 남은 기간은 5년 내외에 불과하므로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조기 대응을 통해 규제 시행에서 우려되는 운영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보험회사가 2011년 IFRS를 시행하는데 대략 3.5년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책임준비금 시가평가회계(IFRS 4 phase 2)에는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⁷⁾
 - 지급여력평가에서도 반드시 IFRS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IFRS와 국제보험감독간 책임준비금 평가기준의 수렴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면 책임준비금 시가평가가 지급여력규제에 향후 수년 내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보험회사는 규제 대응 차원이 아니라 위험관리와 효율적 자본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준비금 시가평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 [kiri](#)

7) 2018년에는 IFRS 4 phase 2 외에 IFRS 9(금융상품회계)도 시행될 예정임.